

징 계 규 정

2001. 2. 8. 제정
2001. 12. 19. 개정
2003. 2. 11. 개정
2004. 1. 6. 개정
2005. 2. 25. 개정
2005. 12. 22. 개정

제1조 서문

이 규정은 한국FPSB가 전문자격을 인증하는 자와 회원이 준수하여야 할 최소한의 윤리 및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윤리규정 및 재무설계업무(Financial Planning)의 업무수행기준을 제시하는 업무수행기준규정을 비롯하여 한국FPSB의 다른 모든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징계절차 및 처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FPSB(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 국제FP표준위원회)가 시행을 권장하고 있는 CFP-Board의 징계 규칙 및 절차(Disciplinary Rules and Procedures)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국FPSB가 전문자격을 인증하는 자와 회원(이하 집합적으로 “자격인증자”라 한다)은 한국FPSB의 모든 규정과 규칙 및 방침(이하 “제반규정”이라 한다)의 현재의 조항뿐만 아니라 앞으로 경우에 따라 적법하게 수정되는 조항이나 또는 새로 제정되는 제반규정에 대하여서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재무설계업무에 대한 전문가자격이 인증된 CFP인증자와 AFPK인증자를 포함하여 한국FPSB의 자격인증자는 해당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윤리기준 강화에 스스로 참여하여 고객보호와 재무설계업무관련 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선도하고 전문가로서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자격인증자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신뢰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관련조항이 서로 직접 연결되는 방법을 채택하여 제2조 윤리위원회와 관련되는 조문은 2.1에서 2.9까지의 일련번호로 조항을 부여하고, 제2.3조의 분과위원회 및 윤리담당자와 관련되는 조문은 2.3.1에서 2.3.9까지의 일련번호로 조항을 부여하고 있다.

제2조 윤리위원회

제2.1조 윤리위원회의 기능과 관장사항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업무수행기준규정 및 한국FPSB의 다른 규정 위

반에 대하여 조사,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는 등 징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자격시험응시자 또는 교육기관 등이 자격시험관리규정 또는 교육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사항을 주관하는 위원회가 제반 조치사항을 관장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CFP 자격인증자와 법률전문가를 포함하는 3명 이상의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은 전문성이 충실하고 윤리성이 투철한 전문가 중에서 한국 FPSB가 위촉한다.

제2.2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사분과위원회 및 심문분과위원회의 활동지원
- (2) 이사회에 대한 정기적인 윤리위원회 활동의 보고
- (3) 이사회에 대한 이 규정의 개정건의안 채택
- (4) 윤리위원회 내부 규칙의 제정

제2.3조 분과위원회 및 윤리담당자

- 1) 윤리위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별로 조사분과위원회와 심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을 지명한다.
- 2) 윤리위원장이 조사분과위원회와 심문분과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조사분과위원회와 심문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징계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 3) 윤리위원장이 조사분과위원회와 심문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조사분과위원회와 심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1조 조사분과 위원회

- 1) 조사분과위원회는 규정위반에 대한 사실을 조사한다.
- 2) 조사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조사분과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어야 한다. 또한 동 위원 중 적어도 2명은 CFP자격인증자이어야 한다.

제2.3.2조 심문분과 위원회

- 1) 심문분과위원회는 조사분과위원회로부터 징계의뢰서를 접수한 사안과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심문을 시행한다.

- 2) 심문분과위원회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심문분과위원회 위원 중 적어도 1명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이어야 한다. 또한 동 위원 중 적어도 2명은 CFP자격인증자이어야 한다.

제2.3.3조 결격사항

윤리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 및 심문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자신 또는 직계가족이나 종업원 등 자신의 관계자가 이해관계인으로 되는 징계절차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자신이 관여하는 경우 이해상충이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발하게 되거나 또는 다른 분쟁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징계절차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4조 윤리담당자

- 1) 한국FPSB는 직원 중에 윤리담당자를 둔다. 조사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조사원을 위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윤리담당자가 규정위반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다. 조사원을 별도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문가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2) 윤리담당자는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윤리위원장이 승인하는 지역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있는 CFP,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컨설턴트 등 전문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 윤리담당자는 한국FPSB 소속으로 일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규정위반 등에 대한 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 징계의 사유

자격인증자가 고객을 위한 업무수행 과정의 여부에 관계없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 (1) 윤리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2) 업무수행기준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 (3) 한국FPSB의 다른 규정이나 규칙, 방침을 위반하는 행위
- (4) 국내법 또는 사법관할권이 있는 다른 나라의 형사법률에 위반하는 행위.
다만, 형사상의 소추가 징계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또한 형사상의 소추면제 또는 무죄판결을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다.
- (5) 전문직업무정지의 사유가 되는 행위. 다만, 전문직업무정지처분이 징계절차진행의 전제조건은 아니며, 또한 전문직업무정지를 위한 혐의 또는 소의 면제나 기각을 이유로 징계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아니 한다.
- (6) 잠정적 자격정지의 사유가 되는 행위

- (7) 징계규정을 위반하거나 징계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 (8) 윤리위원회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응답하지 아니하거나, 윤리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 심문분과위원회, 윤리담당자 또는 조사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9) 한국FPSB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는 진술을 하는 행위
- (10)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등의 전문가로서의 품행에 어긋나는 행위

제4조 징계의 형식

- 1) 윤리위원회와 조사분과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의 입증 가능성이 없거나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과 함께 신고기각이나 개선권고와 함께 사안을 종결한다.
- 2) 신고기각이나 개선권고 또는 징계명령과 함께 계속교육의 이수조건 및 동종의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대응책의 이행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4.1조 비공개견책

비공개견책은 견책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비공개로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다.

제4.2조 공개견책

공개견책은 견책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한국FPSB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광고 등 제18조의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3조 자격정지

- 1) 윤리위원회는 5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 자격인증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2) 한국FPSB는 자격인증자의 자격정지의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한국FPSB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광고 등 제18조의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 자격취소

- 1) 윤리위원회는 자격인증자의 자격을 영구히 취소할 수 있다.
- 2) 한국FPSB는 자격인증자의 자격취소의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해당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고, 한국FPSB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광고 등 제18조의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5조 등록전의 유자격자에 대한 징계

- 1) 윤리위원회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인증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자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인증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 규정된 징계의 형식에 따라 다음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1) 개선권고 기록과 함께 자격인증의 승인
 - (2) 견책기록과 함께 자격인증의 승인
 - (3)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 자격인증의 승인정지
 - (4) 자격인증의 승인거부
- 2) 자격인증의 승인정지 또는 자격인증의 승인거부의 경우 한국FPSB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광고 등 제18조의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3) 등록연기의 대상이 된 유자격자는 제15.2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경과 후 자격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유자격자가 되기 이전의 행위에 따른 징계

윤리위원회는 자격인증자 또는 유자격자가 되기 이전의 행위가 자격인증자 또는 유자격자에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인증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4.3조, 제4.4조에 규정된 징계의 형식에 따라 다음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1)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기간 자격인증의 승인정지
- (2) 자격인증의 승인거부

제5조 잠정적 자격정지

- 1) 잠정적 자격정지란 윤리위원회가 징계조사대상 자격인증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그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격인증자의 자격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격인증자가 ① 제12.5조에 규정된

중대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② 제12.6조에 규정된 전문직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았을 때, ③ 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하였을 때, ④ 공공의 이익 또는 안녕, 질서를 심히 저해하는 행위와 관련되었을 때, ⑤ 파산 또는 한정치산, 금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⑥ 한국FPSB, 다른 자격인증자 또는 회원의 명예 또는 신뢰를 손상하였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잠정적 자격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다.

3) 잠정적 자격정지의 처분으로 해당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징계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1조 소명서 제출요청의 통지

윤리담당자는 잠정적 자격정지의 대상이 된 자격인증자에 대하여 징계절차 진행기간동안 자격인증자의 권리와 자격이 정지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를 나타내는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5.2조 소명요청서의 발송방법

소명요청서는 해당 자격인증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내용증명우편 등 제 17.2조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소명서 제출

해당 자격인증자는 소명요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대상자는 소명서 제출시 심문회에 출석하여 해명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 여부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5.4조 소명서 미제출의 효과

해당 자격인증자가 제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명권리를 포기하고 소명요청서에 기록된 혐의 사실을 이의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윤리위원회의 잠정적 자격정지 처분에 의한 징계안이 자동적으로 확정된다.

제5.5조 소명 심문회

- 1) 해당 자격인증자가 제5.3조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문분과위원회는 심문회의 일정을 확정한다.
- 2) 소명서 제출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자격인증자는 심문회에 출석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변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 3) 심문회에 제시되는 모든 증거는 심문회 개최일 20일 이전에 윤리담당자에게 접수시켜야 한다.

- 4) 제3항에 의하지 아니하는 증거는 심문회에서 신청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증거로 제출될 수 있다.

제5.6조 잠정적 자격정지의 처분

- 1) 해당 자격인증자가 소명요청사안이 제5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윤리위원장은 윤리위원회의 잠정적 자격정지 처분에 따른 징계를 확정한다
- 2) 해당 자격인증자가 유죄의 판결이나 전문직업무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여 재심이 계류중임을 이유로 윤리위원회의 잠정적 자격정지처분의 권한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제5.7조 자격의 자동회복

해당 자격인증자가 잠정적 자격정지의 원인이 되는 형사상의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 등의 사유가 취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윤리위원회에 접수하는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 자격정지처분이 취소된다. 다만, 이러한 자격회복이 해당 자격인증자에 대하여 진행중인 어떠한 징계절차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5.8조 공고

자격인증자에 대한 잠정적 자격정지의 처분은 한국FPSB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공고 등 제18조의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조사

제6.1조 조사의 개시

- 1) 이 규정에 따른 조사절차는 한국FPSB 또는 윤리위원회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서면 신고가 있거나, 한국FPSB의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윤리위원회 회부결의가 있거나, 한국FPSB의 윤리담당자가 규정위반을 인지한 경우에 개시된다.
- 2) 업무수행기준규정위반과 관련된 조사절차는 자격인증자와 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해당업무의 수행과정이나 방법에 이의 또는 의문을 제기하고 서면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 개시된다.
- 3) 윤리담당자는 신고 또는 인지사실에 대하여 적절한 예비조사를 하고 윤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조사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제6.2조 조사절차

- 1) 윤리위원장이 조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윤리담당자는 조사 대상인 자격인증자에 대하여 징계규정상의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과 함께 조사할 사안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2) 통지를 받은 해당 자격인증자는 통지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서면으로 회답을 하여야 한다.
 - (1) 해당 자격인증자가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윤리담당자는 그 사실을 조사보고서에 기록하고 지체없이 조사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 (2) 해당 자격인증자가 서면으로 회답을 하는 경우 윤리담당자는 해당 자격인증자의 회답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첨부한 조사보고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조사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조사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분과위원회는 윤리담당자에게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 조사분과위원회의 처분

- 1) 조사분과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신고기각: 해당사안이 모두 사실일지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의 입증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신고를 기각하고 해당사안을 종결한다.
 - (2) 개선권고: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동종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응방안과 기타 적절한 이행조건을 명령하는 개선권고장을 서면으로 발송하고 해당사안을 종결한다.
 - (3) 징계의뢰: 해당사안이 징계를 요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문분과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한다.
- 2) 조사분과위원회는 신고기각이나 개선권고와 함께 보수교육의 이수조건 및 동종의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대응책의 이행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제6.4조 조사의 진행

윤리담당자와 조사분과위원회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징계의뢰서

제7.1조 조사분과위원회의 징계사유 인정

조사분과위원회는 상당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윤리담당자에게 징계의뢰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다.

제7.2조 징계의뢰서

윤리담당자는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분과위원회의 지시가 있는 경우 징계의 사유 및 징계안을 상세하게 기재한 징계의뢰서를 작성하여 징계의뢰의 대상이 되는 자격인증자에게 발송한다.

제7.3조 징계의뢰서의 송부

징계의뢰서는 해당 자격인증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내용증명우편 등 제17.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최종 주소지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4조 답변서

- 1) 해당 자격인증자는 징계의뢰서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징계의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자격인증자는 답변서상에 징계의뢰서의 징계사유에 대한 인정여부 또는 항변을 기재할 수 있다.
- 2) 윤리담당자는 심문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사전에 제출되는 자료에 징계의뢰서와 함께 답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 3) 해당 자격인증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심문분과위원회는 심문회의 일정을 확정한다.

제7.5조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 1) 해당 자격인증자가 제7.4조에 규정된 기간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의뢰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와 징계안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가 확정된다.
- 2) 윤리담당자는 해당 자격인증자에게 확정된 징계명령을 제7.3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통지한다. 이 징계명령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다.

제7.6조 심문회 출석의 요청

답변서 제출시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격인증자는 심문회에 출석하여 자기자신을 위하여 변론하고 증인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제8조 증거, 증인

제8.1조 징계기록의 사본

- 1) 징계의뢰서를 수령한 해당 자격인증자는 징계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 2) 자격인증자의 징계기록 중 비밀로 분류되지 아니하고 심문분과위원회에 징계의뢰된 사안과 관련된 기록은 제1항의 사본발급요청의 대상이 된다. 이 요청은 윤리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3) 제2항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 자격인증자의 징계기록의 사본은 심문분과위원회에 징계의뢰된 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목적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2조 증거

증거신청은 예정된 심문회기일 30일전까지 접수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다만, 심문분과위원회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3조 증인

증인의 신청은 예정된 심문회기일 30일전까지 접수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증인신청시에는 증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해당증인이 진술할 증언의 성격과 범위를 밝혀야 한다.

제9조 심문회

제9.1조 통지

- 1) 윤리담당자는 심문회기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심문기일통지서를 해당 자격인증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17.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 2) 심문기일통지서에는 지정된 심문회의 기일 및 장소를 명시하고 동시에 해당 자격인증자에게 자기자신을 위하여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리와 증인을 반대심문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 심문분과위원회의 임무

자격인증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징계의뢰에 대한 심문회는 심문분과위원회가 담당한다.

제9.3조 절차와 증거채택

- 1) 심문회는 일반 법정에서 적용되는 절차와 증거채택에 대한 규칙을 따라

야 한다.

- 2) 심문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심문절차와 증거채택에 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법정에서 적용되는 절차와 증거에 대한 규칙을 기본으로 하되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수정하여 채택한다.
- 3) 징계사유는 충분한 증거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여야 한다.
- 4) 심문분과위원장은 심문회의 선서를 주관하고 증언 및 증거의 채택여부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고 심문절차진행을 주관한다.

제10조 심문보고서 및 윤리위원회의 결정

제10.1 심문보고서

- 1) 심문분과위원회는 심문의 종결 후 심문에 따른 사실조사결과 및 심문분과위원회의 심문의견을 첨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심문분과위원회는 심문의견 작성시 해당 자격인증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징계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제10.2 심문의견

심문분과위원회는 심문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징계의 필요여부에 대한 심문의견을 제시한다

- (1) 징계의뢰서의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징계의뢰사유가 사실일지라도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확인과 함께 신고기각 또는 개선권고의 건의
- (2) 적절한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징계사유의 확인과 함께 구체적인 징계안의 건의

제10.3조 윤리위원회의 권한과 결정

- 1) 윤리위원회는 심문분과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해당 자격인증자의 징계를 결정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심문보고서의 기록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문분과위원회의 사실 확인을 인정하여야 하나, 심문분과위원회의 심문의견을 변경할 수 있다.
- 3) 윤리위원회는 심문분과위원회의 심문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심신청

제11.1조 이의신청

징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징계명령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자격인증자가 징계명령이 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확정된다.

제11.2조 재심위원회

- 1) 피청구인으로부터 제11.1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없이 재심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다.
- 2) 재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인증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재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조사분과위원회 위원이어야 하며 또한 동 위원 중 적어도 2명은 CFP자격인증자이어야 한다.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3) 재심위원회는 이의신청건에 대한 조사 검토를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결하여야 한다.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2조 유죄판결 및 전문직업무정지

제12.1조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의 증명

- 1) ①법원의 유죄판결(파산, 한정치산, 금치산의 선고 및 약식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을 증명하는 문서, ②전문직업무정지, 자격정지 또는 제명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정부 또는 업계자율규제기관의 문서, ③직무정지나 면직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금융기관, 전문직서비스제공기관, 기타법인 또는 단체의 문서는 유죄판결, 전문직업무정지, 자격정지, 제명처분, 직무정지 또는 면직처분의 사실에 대한 확정적 증거로 인정된다.
- 2) 해당 자격인증자의 유죄판결, 전문직업무정지, 자격정지, 제명처분, 직무정지 또는 면직처분의 사실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명된 경우 심문분과위원회는 이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서만 심문한다. 해당 자격인증자는 제1항의 증거를 제외하고 윤리담당자가 제시한 다른 증거의 부당성에 대하여서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제12.2조 보고의무

자격인증자는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음주 또는 약물사용에 관련된 경우 제외)을 제외한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전문직업무정지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통지 수령 후 10일 이내에 이를 한국FPSB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에 근거한 징계절차 개시

- 1) 한국FPSB는 제12.5조에 규정된 중대범죄이외의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사분과위원회로 회부한다.
- 2) 중대범죄의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한국FPSB는 유죄판결의 기록 또는 전문직업무정지의 증명을 득한 다음에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12.4조 중대범죄의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에 따른 잠정적 자격정지

중대범죄의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의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윤리담당자는 해당 자격인증자에 대하여 자격인증자의 권리와 자격이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정지되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를 나타내는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12.5조 중대범죄의 정의

중대범죄란 ①장기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②사기, 사취, 횡령, 자금유용, 자산유용, 부당취득, 또는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 ③전항의 범죄의 미수 또는 공모 행위, 또는 타인에게 사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6조 전문직업무정지의 정의

전문직업무정지란 ①정부기관, ②증권, 보험, 법률, 회계, 세무, 부동산 등의 전문자격을 인증하는 업계자율규제기관, ③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④법률, 회계, 세무, 부동산 등 전문직서비스제공기관, ⑤기타 관련법인 및 단체 등의 징계조치에 따른 업무정지, 자격정지, 제명처분, 직무정지 또는 면직처분을 말한다.

제13조 조정신청서

징계의뢰의 대상 자격인증자는 징계의뢰서 발송일 이후 윤리위원회의 최종확정이전의 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1) 윤리담당자는 조정신청서를 검토한 후 건의안과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문분과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조정신청이 접수될 경우 진행중인 해당 징계절차는 중단된다

제13.1조 조정신청서의 내용

조정신청서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 1) 해당 자격인증자가 관련된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해당규정 또는 법률의 조항

- 2) 해당 자격인증자가 스스로 감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구체적인 징계안
- 3)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해당 자격인증자의 각서

제13.2조 조정신청의 수락

- 1) 심문분과위원회가 조정신청을 수락하는 경우 심문분과위원회는 수락의견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2) 윤리위원회가 심문분과위원회의 조정신청 수락을 확인하는 경우 동일자로 해당 징계절차는 종료된다.
- 3) 조정신청이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일자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3조 조정신청의 거부

심문분과위원회가 조정신청을 거부할 경우 중단되었던 해당 징계절차는 재개된다.

제13.4조 공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한국FPSB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공고 등 제18조의 징계처분의 공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윤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후 조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의 처분이 확정된 자격인증자는 즉시 업무를 정지하여야 하며 한국FPSB의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특히 자격인증자라는 사실을 광고, 홍보하거나 또는 명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복권

제15.1조 자격취소후 복권

자격취소 처분을 받은 자격인증자는 복권신청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

제15.2조 자격정지후의 복권

- 1) 1년 이내의 자격정지의 경우

윤리위원회의 자격정지명령에 다른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자격정지 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복권신청서와 함께 자격정지 기간 중 자격정지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한국FPSB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 만료일자로 자동으로 복권된다.

2) 1년을 초과하는 자격정지의 경우

- (1) 자격정지 기간만료 후 6개월 이내에 복권신청서, 제1항에 의한 확인서, 징계절차 진행에 따른 제반비용의 납입증명서 및 해당 자격인증규정에 따른 서류를 한국FPSB에 제출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와 해당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전항의 기간내에 복권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복권신청이 접수될 때까지 자격정지의 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CFP자격의 정지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및 AFPK자격의 정지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복권신청이 허용되지 아니 한다.
- (3) 복권신청의 심의시 윤리위원회는 복권신청인이 충분히 반성을 하였는지, 징계명령과 징계규정상의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는지와 함께 자격의 회복이 적절하다는 증거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3조 복권신청의 조사

- 1) 제1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권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윤리담당자는 즉시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복권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복권신청인의 과거 징계기록과 함께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복권신청인은 전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4조 복권신청이 기각된 경우의 재신청

이 규정에 따른 복권의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향후 1년간 복권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며, 복권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자격정지의 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5.5조 복권 수속 비용

복권신청인은 복권 수속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과정의 비밀유지

제16.1조 비밀유지

- 1) 이 규정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윤리위원회, 심문분과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 윤리담당자 및 한국FPSB의 징계관련 기록은 비밀로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 2) 윤리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 10년이 초과된 징계기록은 무기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비밀분류에서 해제할 수 있다.

제16.2조 비밀유지의 예외

- 1) 징계절차가 유죄판결 또는 전문직업무정지에 기초하는 경우
- 2) 해당 자격인증자가 동의하는 경우
- 3) 진행중인 소송절차와 관련된 법원의 명령 또는 적절한 감독권을 가진 정부기관의 요청에 따른 경우

제17조 일반 규정

제17.1조 정족수

윤리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 심문분과위원회 및 재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제17.2조 통지 및 송달

이 규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통지는 문서로서 직접 전달하거나 또는 내용증명우편으로 한국FPSB의 기록에 의한 최근의 주소로 송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경우에는 적절하게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제17.3조 비용

- 1) 윤리위원회는 징계절차에 따라 심문회가 개최되는 경우에는 심문회 개최에 따른 소요비용을 미리 확정하고 심문회 출석을 요청하는 해당자격인증자에 대하여 이 비용을 심문회 기일 30일전까지 미리 납입하게 한다.
- 2) 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재심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3) 윤리위원회는 심문 또는 재심결과 신고기각으로 판정되는 때에는 해당 자격인증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환급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처분의 공시

제18.1조 공시의 방법

- 1) 공개견책, 자격정지, 자격취소, 등록전 유자격자에 대한 징계, 잠정적 자격정지 등의 처분은 한국FPSB(FPSB Korea)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2)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에 병행하여 자격인증본부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 ① 신문공고에 의한 방법
 - ② 보도자료, 공시자료 또는 이와 비슷한 자료를 통한 공개

- ③ 파이낸셜 플래닝 (Financial Planning) 지 또는 전문지 등 기타 잡지를 통한 공고
- ④ 기타 윤리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

제18.2조 공시의 내용

- 1) 공시의 내용에는 다음의 사항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징계대상자에 관한 사항:
 - ① 성명
 - ② 주민등록번호의 앞번호 6 자리
 - ③ 자격인증번호 (자격인증자가 아닌 경우에는 회원번호 또는 등록전유자격 등에 대한 사항)
 - (2) 징계처분의 형식 (이행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조건의 내용을 포함한다)
 - (3) 징계의 사유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 (4) 관련규정 또는 법률의 조항
 - (5) 기타 윤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법인이 징계대상인 경우에는 전항에 규정된 내용 중 징계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다음의 사항으로 한다.
 - ① 법인의 명칭
 - ② 법인의 주소
 - ③ 대표자 성명

제18.4조 공시의 시기

윤리위원회가 특별히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처분의 공시는 동 처분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5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시문을 제외한 징계관련기록은 제16.1조 제2항 및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무설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전문자격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교육요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전문자격의 소지자에 대하여는 해당 전문자격인증기관에 대하여 별도로 이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 및 자격시험관리규정의 시험부정행위관련 처리기준에 의한 조치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